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7월 25일 01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	3

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
작성일 2023.04.12 10:07 조회수 302 수정일 2024.06.26 13:17

- ✓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
- ✓ 민원내용 비디오물 제작, 배급업 변경신고

- ✓ 관계법령 『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』제6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

- ✓ 구비서류 ○ 신청서
 ○ 신고증
 ○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○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 ○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
- ✓ 처리부서 문화예술과

- ✓ 협의부서

- ✓ 접수 민원지적과


- ✓ 수수료 조례

- ✓ 처리기간 3일

- ✓ 기타사항

- ✓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→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→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→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
 → ⑤ 현지확인 → ⑥ 기안·결재 → ⑦ 등록증 작성 → ⑧ 민원인 교부

- ✓ 기타참고사항

<p>첨부파일</p> <p>전체(Zip)다운로드</p>	<p> [별지 제28호서식] 비디오물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서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(1229 hit/ 18.5 KB) ↓</p> <p>미리보기</p>
--	---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